

남양주시 고시 제2026-38호

덕소6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경기도 고시 제2010-251호(2010.08.02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남양주시 고시 제2017-154호(2017.05.18.), 제2020-383호(2020.09.29.), 제2023-109호(2023.03.16.), 제2024-328호(2024.07.25.), 제2025-308호(2025.07.24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, 남양주시 고시 제2019-151호(2019.04.02.), 제2021-379호(2021.09.07.), 제2022-198호(2022.05.24.)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13번지 일원 덕소6A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동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(변경)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. 1. 29.

남 양 주 시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재개발사업
- 나. 명 칭 : 덕소6A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-8(덕소리513번지) 일원
- 나. 면 적 : 11,986.1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명 칭 : 덕소6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나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16번길 13-6, 2층
다. 대 표 자 : 덕소6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박승희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(최초) 2019.04.02. / (변경) 2021.09.07. (변경) 2021.09.07. / (변경) 2026.01.28.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※ 남양주시 고시 제2025-308호(2025.07.24.)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반영

대지위치	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13번지 일원			
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			
규 모	지하2층 ~ 지상26층(총4동, 212세대)			
면 적	구역면적	11,986.1㎡		
	대지면적	7,946.2㎡		
	기반시설면적	4,039.9㎡		
건 폐 율	계 획	35.36 %	법 정	60% 이하
용 적 률	계 획	277.79 %	법 정	278% 이하
건축면적	2,809.6164㎡			
연 면 적	32,894.0277㎡			

- 나. 주택공급 및 분양자격 변경 없이 정비사업비 변경되어 관리처분계획(변경)